

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'97. 9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보건소 수가조례의 근거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('95.12.29)되었고, 수질검사적용 기준단위가 일원화 됨으로써 현 조례와 맞지 않으므로 관련사항 개정.

□ 주요골자

가.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 14조로 관련법조항 개정 (안 제1조)

나.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, 제2항의 별표1, 별표2에 의하여 수질검사적용 기준단위의 일부개정 (안 별지4, 5, 6호 서식)

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조 “보건소법 제8조” 를 “지역보건법 제14조”로 한다.

“(별지 제4호서식) (별지 제5호서식) (별지 제6호서식)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

(별지 제4호서식)

수 질 검 사 성 적 서

가 건 물 명 :

시 험 목 적 :

채 수 장 소 :

의뢰자 주소 :

성 명 :

접수 년월일 : 19 년 월 일

채수 년월일 : 19 년 월 일

검 사 방 법 : 먹는물수질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 [별표1]
[별표2] 에 준하여 시험함.

비 고 : 이 검사성적은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
수 없으며 용기·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.

시 험 결 과

시 험 항 목	기 준		시 험 성 적
색도(Color)	5도이하		
탁도(Turbidity)	2도이하		
냄새(Odor)	무취	소독으로 인한 냄새,맛 제외	
맛(Taste)	무미		
암모니아성질소(NH ₂ -N)	0.5mg/ ℓ 이하		
질산성질소 (NO ₃ -N)	10mg/ ℓ 이하		
일반세균수(1ml 중)	100이하		
대장균군(50ml 중)	음성		
판 정:			

19 년 월 일

파 주 시 보 건 소 장

(별지 제5호서식)

수 질 검 사 성 적 서

가 건 물 명 :

시 험 목 적 :

채 수 장 소 :

의뢰자 주소 :

성 명 :

접수년 월일 : 19 년 월 일

채수년 월일 : 19 년 월 일

검 사 방 법 :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 [별표3] 제2호에 준하여 시험함.

비 고 : 이 검사성적은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·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.

시 험 결 과

시험항목	기 준	시험성적
수소이온농도	5.8 - 8.6	
과망간산칼륨소비량	10mg/ℓ 이하	
색도(Color)	5도이하	
탁도(Turbidity)	2도이하	
대장균군(50ml 중)	음성	
판정:		

19 년 월 일

파 주 시 보 건 소 장

(별지 제6호서식)

수 질 검 사 성 적 서

가 건 물 명 :

시 험 목 적 :

채 수 장 소 :

의뢰자 주소 :

성 명 :

접수년월일 : 19 년 월 일

채수년월일 : 19 년 월 일

검 사 방 법 :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 [별표3] 제2호에 준하여 시험함.

비 고 : 이 검사성적은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·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.

시험결과

시험항목	기준	시험성적
탁도(Turbidity)	3도이하	
과망간산칼륨소비량	25mg/ℓ 이하	
대장균군(1ml중)	1이하	
판 정 :		

19 년 월 일

파 주 시 보 건 소 장